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FAQ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을 2년마다 비관리직 직원에게는 1시간, 관리직 직원에게는 2시간씩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 기한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서에서는 고용주들이 교육자를 고용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생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DFEH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관리직 직원용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기를 클릭하여 교육을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몇 달 동안, DFEH는 감독직 직원을 위한 교육 또한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동일한 곳에서 일하지 않거나 모든 직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캘리포니아는 성희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에 어긋납니다. 성희롱과 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이나 다른 이유로(인종, 피부색, 국적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직장 내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교육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모든 관리직 및 비관리직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관리직 직원은 1시간, 관리직 직원은 2시간의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에 한 번입니다.

■ 교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모든 직원은 2021년 1월 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규 관리직 직원에게 관리 직책을 맡은 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직장의 신규 관리직 직원은 관리 직책을 맡은 지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비관리 직원은 입사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은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 임시직 또는 계약직인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예. 2021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미만 계약직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근무 시간 100시간 초과 전 중 이른 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독립 하청업자, 자원봉사자 또는 무급 인턴인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 반드시 온라인으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개별 또는 단체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주는 실제 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다른 효과적인 상호적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직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로 진행할 수 있고, 총 시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시간을 분할하여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육에는 성희롱 금지, 예방, 교정 및 성희롱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에 관련된 연방 및 주법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괴롭힘, 차별 및 보복의 실질적인 예시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으로 인한 폭력 행위 및 괴롭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DFEH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DFEH는 이러한 교육을 고용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요건 충족을 위해 DFEH의 교육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교육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추가 교육을 위한 휴가 또는 추가 비용 지급 가능 여부를 고용주와 상의하십시오.

■ 현재, 이전, 대체 또는 공동 고용주로부터 지난 2년 이내에 Gov. Code 12950.1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죠?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2 CCR 11024\(b\)\(5\)](#) 에서 “중복 교육”을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담당자인 직원인 경우에도 고용주가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교육 제공자(및 교육을 제공하는 개인)는 고용주가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성희롱 방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직원일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외에 있는 직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을 마친 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 서류가 있나요?

고용주가 교육 수료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완료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저장 또는 인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용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DFEH는 인증서 또는 이 교육의 완료 여부를 저장하거나 추적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 아직 교육 세션이 열려있다면, '뒤로' 버튼을 눌러 돌아간 뒤 인증서를 재생성을 시도해보십시오. 인증서가 재생성되지 않는 경우, 완료 인증서를 다시 받으려면 교육을 다시 수료해야 합니다.

■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고용주가...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Gov. Code 12950.1(a)-(b).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필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용인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 시간에 그러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교육은 개인 고용의 일부로 고용주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feh.ca.gov/shpt/>